

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

Version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Title

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

Document #: SK케미칼-일반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5/8/1

목 차

제1항 총칙	
제1조 (목적)	4
제3조 (용어 정의)	4
제3조 (적용범위)	5
제2장 준법경영의 실천	
제4조 (회사의 준법경영 실천)	6
제5조 (임직원의 준법경영 실천)	6
제3장 실행조직	
제1절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제6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	7
제7조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8
제2절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 기능조직	
제8조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	8
제9조 (컴플라이언스 기능조직)	9
제10조 (정보의 접근 및 비밀유지)	10
제11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	10
제4장 위험진단과 대응	
제12조 (점검)	11
제13조 (위험대응)	12
제14조 (사후관리)	13
제5장 교육	
제15조 (준법교육)	13
제6장 제재 및 포상	
제16조 (제재)	14
제17조 (포상)	14
제7항 보칙	
제18조 (개정)	15
제19조 (세부 규정의 제정)	15
부칙	15



Title

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5/8/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SK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가 준법경영 실천을 통한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회사가 수립·운영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내용과 실행조직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회사 준법통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란 회사 및 임직원이 법령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내 제도를 정립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며,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여 예방대책을 수립·실행하는 등 자발적인 준법경영 실천을 위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과 업무를 의미한다.
2. “법령 등”이란 회사·자회사 소재국의 준거법령 및 회사·자회사가 자체 제정한 사규를 의미한다.
3. “컴플라이언스 위험”이란 회사 또는 임직원이 법령 등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준법 경영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제반 위험을 의미한다.
4.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이란 준법지원인의 지휘·감독 하에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립·운영을 주관하고, 컴플라이언스 기능조직이 수행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지원·조정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5. “컴플라이언스 기능조직”이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별 영역 수행을 주관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6. “자회사”란 회사가 발행주식의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회사 및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과 이들의 모든 업무 및 관련활동에 적용되며, 회사 및 자회사의 i) 소재국 준거법령, ii) 정관, iii) 준법통제기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본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회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준법문화 조성·확산을 위하여 자회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교육, 점검, 내부규정 정비 지원, 준법서약 등의 준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지원활동은 자회사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회사는 인수합병시 대상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및 실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준법통제기준에서 정한 회사의 법적 위험평가 및 유효성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하며, 그 평가결과 및 실사결과는 회사의 PMS규정에 따라 M&A 등의

투자심의에서 중요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규모에 따라 평가 및 실사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준법경영 실천

제4조 (회사의 준법경영 실천)

- ① 회사는 법령 등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스스로 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i)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ii)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경영진의 준법경영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며, iii) 준법 점검, 위험진단, 교육 등의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며, iv) 컴플라이언스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이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임직원의 준법경영 실천)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 또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조직에 질의·상담 후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법령 등에 위반되는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에 따라서는 아니된다. 법령 등에 위반되는 업무 지시를 받거나, 법령 등에 위반되는 업무행위 및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인지한 임직원은 이를 즉시 회사의 윤리경영 사이트 또는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으로 신고·제보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경우,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제보자는 제보사실은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3장 실행조직

제1절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제6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평가·관리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컴플라이언스 실행조직과 유관부서 간의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산하에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준법지원인을 포함한 각 유관부서(HR, 재무, SHE) 및 사업부서의 본부장을 위원으로 당연 지정한다.

-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당연직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 ① 위원회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험요소 점검결과와 대응방안, 개선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전사 리스크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시 결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전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회사·자회사의 임원 및 유관부서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필요시 심의·의결 대상 안전과 관련된 회사 자회사의 임원을 임시직 위원으로 출석시키거나 또는 보고·질의 응답을 위해 배석시킬 수 있다.

제2절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 기능조직

제8조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전반을 주관하는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을 두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간 단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준법지원인 및 위원회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실적 보고
3. 컴플라이언스 기능조직 간의 수행영역·기능에 대한 조정·지원



Title

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5/8/1

4.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령·정책·규제 현황(개정사항 포함) 모니터링 및 전파(연 2회 이상)
5. 컴플라이언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6. 컴플라이언스 위험 요소 및 현안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부조사 수행,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이행 지원
7. 경영층의 준법경영 실천 메시지 기획 및 대내·외 공표 지원

제9조 (컴플라이언스 기능조직)

법무, 지식재산, 정보보호, 인사노무, 회계세무, 안전환경, 공정거래 등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별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은 컴플라이언스 기능조직으로서, 각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연간 단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2. 담당 전문영역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행
3.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현황·실적 보고
4. 담당 전문영역에 대한 법령·정책·규제 현황(개정사항 포함)의 모니터링 및 전파
5. 담당 전문영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19조의 세부 규정의 제정, 시행, 평가 및 보완

	Title	
	<h1>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h1>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5/8/1	

6.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위험 요소 및 현안 관련 정보 공유 및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대응 및 사후관리
7. 기타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이 요청하는 사항의 지원·실행

제10조 (정보의 접근 및 비밀유지)

- ①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 기능조직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유관부서 및 임직원에게 관련 자료·정보의 제출 또는 서면질의·인터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유관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 기능조직은 전항에 따라 취득하거나 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생성한 정보 및 자료를 보안관리규정 등 회사의 사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

- ① 총괄조직과 기능조직은 모니터링, 교육 등 일상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행, 정책·규제 동향 사내 공유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를 둘 수 있다.
- ②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는 제9조 기능조직의 각 부서장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조직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Title	
	<h1>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h1>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5/8/1	

제4장 위험진단과 대응

제12조 (점검)

- ①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 기능조직은 회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포함한 임직원의 전반적인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②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 기능조직은 규제 동향, 위험의 발생 가능성, 영향의 심각성, 회사의 신설 또는 인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 기능조직은 자체 수립한 점검 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부서 및 소속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 기능조직은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권고안의 채택여부 및 권고안 채택 시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⑤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기능조직을 포함한 유관부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은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준법지원인 및 위원회에 보고한다.

	Title	
	<h1>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h1>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5/8/1	

제13조 (위험대응)

- ①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인지한 임직원은 해당 사실을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사내에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자회사는 해당 회사의 전결규정에 규정된 전결권자)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은 전항 등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인지하게 된 경우 컴플라이언스 기능조직 및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내부조사를 통한 위험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준법지원인 및 대표이사(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시)에 보고한 후 그 결과를 대상 부서에 통보한다.
- ③ 전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는 컴플라이언스 위험 예방·재발방지를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 계획과 현황을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에 회신한다.
- ④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사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파하며, 필요시 컴플라이언스 기능부서 등과 협업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사내에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자회사는 해당 회사의 전결규정에 규정된 전결권자의 주관하에 컴플라이언스 위험 대응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 및 기능조직은 위험확산 방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자회사와 상호 협업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Title	
	<h1>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h1>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5/8/1	

제14조 (사후관리)

- ①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은 제12조의 점검 및 제13조의 위험대응 조치 후 발생원인, 대응과정의 적절성,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은 전항의 분석 및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유관부서로 하여금 개선과제를 이행하도록 안내한다.
- ③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은 개선과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④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당국으로부터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조직의 임원 또는 준법지원인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역을 이사회 의사록/회의록에 기록하게 한다.

제5장 교육

제15조 (준법교육)

- ①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 기능조직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준법교육을 실시하며, 신규채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 준법교육 및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특별 준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은 이사회가 사내/외 전문가로부터 법규제

변화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교육을 받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제1항의 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 기능조직이 마련한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 ⑤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은 전사 교육현황을 관리하고 교육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컴플라이언스 기능조직에게 개선방안을 보완하도록 요청한다.
- ⑥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과 기능조직은 준법교육과는 별도로 업무상 컴플라이언스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을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제재 및 포상

제16조 (제재)

- ①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의 관련 사규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재의 종류 및 기준은 상별규정 등 관련 사규에 따르되, 준법지원인은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회사의 관련 사규에 따른 징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을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Title	
	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	
	Document #: SK케미칼-기본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5/8/1	

제17조 (포상)

준법지원인은 회사 및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행위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험에 대한 신속한 제보, 위험요인 사전 감지 및 조치,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방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임직원에게 대한 적절한 포상을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18조 (개정)

본 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 조 (세부 규정의 제정)

컴플라이언스 총괄조직/기능조직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실행방법 제시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규정·절차·가이드라인 등의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 규정의 제·개정 권한 및 절차는 전결규정, 사규관리규정 등 회사의 사규에 따른다.

부 칙<2025. 8. 1>

제1조 (시행일)

본 기준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